

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 
운용계획 변경안  
**심사보고서**

의안 번호	3724
----------	------

2026년 6월24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6. 5.26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6. 5.27
4. 상정일자 :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6.19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이동률)

- 의안번호 제3724호 「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에 따라 2026년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% 초과하여 변경되었음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5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63백만원에서 134백만원으로 71백만원 증가하였음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71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105백만원에서 176백만원으로 71백만원 증가하여 67.1% 변경되었음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

[ 수입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2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,105,544	1,176,377	70,833	6.4%
세외수입	42,300	42,300	-	-
경상적세외수입	42,300	42,300	-	-
이자수입	42,300	42,300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42,300	42,300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,063,244	1,134,077	70,833	6.7%
보전수입등	63,244	134,077	70,833	111.9%
예치금회수	63,244	134,077	70,833	111.9%
<b>예치금회수</b>	63,244	<b>134,077</b>	<b>70,833</b>	<b>111.9%</b>
내부거래	1,000,000	1,000,000	-	-
전입금	1,000,000	1,0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000,000	1,000,000	-	-

[ 지출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1차변경	2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,105,544	1,105,544	1,176,377	70,833	6.4%
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	992,000	992,000	992,000	-	-
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	992,000	992,000	992,000	-	-
사무관리비	57,700	40,000	40,000	△17,700	30.7%
자산및물품취득비	934,300	952,000	952,000	17,000	1.8%
재무활동	105,544	105,544	176,377	70,833	67.1%
보전지출	105,544	105,544	176,377	70,833	67.1%
여유자금 예치	105,544	105,544	176,377	70,833	67.1%
<b>일반예치금</b>	105,544	105,544	<b>176,377</b>	<b>70,833</b>	<b>67.1%</b>
행정운영경비	8,000	8,000	8,000	-	-
기본경비	8,000	8,000	8,000	-	-
기금관리비	8,000	8,000	8,000	-	-

### 3. 검토의견<sup>1)</sup>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중 '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**예치금 회수**가 7,0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
  -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①**여유자금예치**를 7,000만원 증액하고, ①**다른 정책사업인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**중 세부사업인 **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**의 편성목 간 지출계획을 증·감<sup>2)</sup> 조정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3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지출계획중 ① 정책사업인 **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**의 경우, 당초 정책사업 지출계획(9억 9,200만원)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인 편성목의 **일반운영비**(사무관리비 △1,700만원 감소)와 **자산취득비**(자산및물품취득비 1,700만원 증가)를 증·감 조정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,
    - ②**다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문화본부 박물관과)**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(1억 500만원)보다 67.1%, 7,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,700천원 증가, 사무관리비 △17,700천원 감소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-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, 일부 정책사업 내 세부항목(편성목)의 지출계획을 증·감 조정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 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<sup>4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**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**의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증감내역을 오기<sup>5)</sup>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,
  - 의안의 주요내용에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될 경우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

[ 지출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1차변경	2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,105,544	1,105,544	1,176,377	70,833	6.4%
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	992,000	992,000	992,000	-	-
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	992,000	992,000	992,000	-	-
사무관리비	57,700	40,000	40,000	△17,700	30.7%
자산및물품취득비	934,300	952,000	952,000	17,000 17,700	1.8%

4) 「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박물관·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구입에 필요한 부대 경비
2. 박물관·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

5) 사무관리비가 △17,700천원 감소된 것과 연동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변경안에 기재되어 있는 17,000천원이 아닌 17,700천원 증가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「소위원회 미구성」

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6. 6.19)

#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7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에 따라 2026년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%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전년도(2025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63백만원에서 134백만원으로 71백만원 증가하였음.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71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105백만원에서 176백만원으로 71백만원 증가하여 67.1% 변경되었음.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

[ 수입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2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합 계</b>	<b>1,105,544</b>	<b>1,176,377</b>	<b>70,833</b>	<b>6.4%</b>
<b>세외수입</b>	<b>42,300</b>	<b>42,300</b>	-	-
경상적세외수입	42,300	42,300	-	-
이자수입	42,300	42,300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42,300	42,300	-	-
<b>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</b>	<b>1,063,244</b>	<b>1,134,077</b>	<b>70,833</b>	<b>6.7%</b>
보전수입등	63,244	134,077	70,833	111.9%
예치금회수	63,244	134,077	70,833	111.9%
<b>예치금회수</b>	63,244	<b>134,077</b>	<b>70,833</b>	<b>111.9%</b>
내부거래	1,000,000	1,000,000	-	-
전입금	1,000,000	1,0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000,000	1,000,000	-	-

[ 지출계획 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1차변경	2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합 계</b>	<b>1,105,544</b>	<b>1,105,544</b>	<b>1,176,377</b>	<b>70,833</b>	<b>6.4%</b>
<b>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</b>	<b>992,000</b>	<b>992,000</b>	<b>992,000</b>	-	-
서울시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	992,000	992,000	992,000	-	-
사무관리비	57,700	40,000	40,000	△17,700	30.7%
자산및물품취득비	934,300	952,000	952,000	17,000	1.8%
<b>재무활동</b>	<b>105,544</b>	<b>105,544</b>	<b>176,377</b>	<b>70,833</b>	<b>67.1%</b>
보전지출	105,544	105,544	176,377	70,833	67.1%
여유자금 예치	105,544	105,544	176,377	70,833	67.1%
<b>일반예치금</b>	105,544	105,544	<b>176,377</b>	<b>70,833</b>	<b>67.1%</b>
<b>행정운영경비</b>	<b>8,000</b>	<b>8,000</b>	<b>8,000</b>	-	-
기본경비	8,000	8,000	8,000	-	-
기금관리비	8,000	8,000	8,000	-	-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김도형 (☎ 2133-4185)